



제 416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울산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근거 신설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28호)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66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부설기관 설치 근거 마련(서범수의원안 제3조의2·제4조·제16조의2 및 김기현 의원안 제3조의2·제4조·제16조의2)	4
2.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근거 및 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서범수의원안 제7조의2·제7조의3·제9조·제9조의2·제9조의4·제9조의5 및 김기현의원안 제9조·제9조의2·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8
※ 참고자료	
1. 전국 과학영재학교 현황	20
2. 전국 과학고등학교 현황	21
3. 한국과학영재학교 기본 현황	22

I. 제안경위

【서범수의원안】

가. 발 의 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4.

다. 회 부 일 : 2024. 6. 11.

【김기현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6. 5.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범수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마.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김기현의원안】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한편,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바, 법체계 조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부설기관 설치 근거 마련 (서범수의원안 제3조의2·제4조·제16조의2 및 김기현의원안 제3조의2·제4조·제16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서범수·김기현의원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안】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 설></u> 4.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u>울산과기원에</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u>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u> 제4조(정관)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u> 4.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u>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u>----- -----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② ~ ⑤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김기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u>울산과기원</u>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u>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u> 제4조(정관)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u> 4.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u>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의 목적은 울산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영재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영재학교 설치 근거 조문을 신설¹⁾하고 있어 별도로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영재학교 설치하는 가능한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례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 제9413호, 2009.2.6. 시행)에서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설기관 근거 조항을 신설하지는 않았고, 부설기관 근거 조항은 「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 제15564호, 2018.7.18. 시행)에서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신설한바 있음.

이처럼 울산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설치를 위하여 별도로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둘 필요는 없으나, 울산과학기술원과 그 설립취지 및 운영형태가 유사한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모두 근거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각 과학기술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울산과학기술원법」에도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임.

1) 서범수의원안은 제7조의2·제7조의3·제9조·제9조의2·제9조의4·제9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고, 김기현의원안 제9조·제9조의2·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음.

<각 과학기술원법 부설기관 설치 근거 규정 현황>

구분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조문	제3조의2(부설기관)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부설기관)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취지	부설기관 남설 방지	부설 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부설기관 남설 방지
시행일	2018.7.18.	2024.1.30.	2018.7.18.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영재학교 외에 나노종합기술원, 고등과학원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뇌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으나, 광주과학기술원은 별도로 부설기관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영재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부설기관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²⁾하였음.

2) 「광주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부설기관)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근거 및 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서범수의원안 제7조의2·제7조의3·제9조·제9조의2·제9조의4·제9조의5 및 김기현 의원안 제9조·제9조의2·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서범수·김기현의원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영재학교의 교원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교원의 임면) ① <u>울산과기</u> 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 ④ (생략) ⑤ 총장은 <u>제9조의2제1항</u>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u>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 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로 본다.</u> ③ <u>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u> ④ <u>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 휘·감독한다.</u> <u>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 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u> 제9조(교원의 임면) ① <u>울산과기 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9조의2제1항</u> 전단 에----- -----

현행	개정안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 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생략)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 교원 임용 등 인사	----- ----- ----- -----. ----- ----- ----- -----. ⑥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 -----

현행	개정안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교원인사위원회</u>를 둔다. <u><후단 신설></u>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정관</u>으로 정한다. <u><신설></u>	----- -----<u>교원인사위원회</u>(이하 “<u>교원인사위원회</u>”라 한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u>교원인사위원회</u>(이하 “<u>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 ② ----- -----<u>정관</u>으로, 과학영재학교 <u>교원인사위원회</u>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과학영재학교의 학칙</u>으로 정한다. <u>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u> ① <u>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u> ② <u>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u> ③ <u>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김기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9조(교원의 임면) ① <u>울산과기원의 교원</u>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9조(교원의 임면) ① <u>울산과기원(제16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u>-----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⑤ 총장은 <u>제9조의2제1항</u>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u>제9조의2제1항</u>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9조의2제1항 전단</u> <u>에</u>----- ----- ----- ----- -----. ----- ----- ----- ----- -----. ⑥ <u>제9조의2제1항 전단</u>에----- ----- ----- ----- ----- ----- -----. ----- ----- ----- -----

현행	개정안
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생략)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교원인사위원회</u>를 둔다. <u><후단 신설></u>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정관으로 정한다.</u> <u><신설></u>	----- ----. 1.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 ----- -----<u>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u>----- ----. 제16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u>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② ----- -----<u>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u> <u>제16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u> ① <u>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u>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u> <u>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u> <u>제16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u> <u>제16조의5(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u>

현행	개정안
<신설>	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6(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현행	개정안
	<u>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현재 과학기술원 부설로 운영되는 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는데,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3년 부산과학고등학교를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였고, 2009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로 전환하였음.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고등학교와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 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과학영재학교는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지방의회 등의 철학에 따라 재정지원이 다소 유동적·불안정적이고 이에 따라 학교운영과 교원 임용 역시 시·도 교육청에 종속되어 과학영재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다소

3)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한되는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100%에 이르고 3학년 교육과정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도교수 아래 졸업연구를 수행하는 KAIST HRP를 통해 고등교육과 연계를 높이는 등 우수한 교원을 통해 과학 분야에 재능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육성하는 장점이 있음.

【이공계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현황】

구 분		과기정통부 소관 학교	교육부 소관 학교	
		과학영재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대상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 1개교	- 과학영재학교 5개교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대전) - 과학예술영재학교 2개교 (세종, 인천)	과학고등학교 20개교 (한성, 세종, 부산, 부산일, 대구일, 인천, 인천진산, 대전동신,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상, 경남, 창원, 제주)
법적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 한국과학기술원법	영재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운영주체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원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학생선발		- 전국단위 모집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의무 선발규정 없음 - 정원의 7% 이내 정원의외 선발	- 전국단위 모집 (예와: 광주 - 전국단위 50% 모집+지역단위 50% 모집) - 정원 1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권고	- 지역단위 모집 - 정원의 2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의무 선발
교육과정 이수/평가		- 이수학점제(155학점) -교과, 창의연구, 리더십활동 -KSA 교육과정 개정('23)에 따라 이수학점(174→155) 변경 - 절대평가	- 이수학점제(170학점 내외) -교과, 연구 및 창의적체험활동 - 절대평가	- 이수 단위제(232~236학점)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상대평가
졸업연한		3년 (과기원 조기진학 가능)	3년	3년 (조기졸업 가능)
교원	임용	교원 자격이 없는 특수 분야 전문가 임용가능 (박사급계약직, 대학교수 활용)	교원 자격이 없는 특수 분야 전문가 임용가능 (박사급계약직, 대학교수 활용)	교원 자격이 있는 자만을 임용
	근무조건	전보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 가능	전보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 가능	시도교육청 전보규정에 따라 순환 근무
예산 지원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100%	(교육부) 학교운영 전반 지원	(교육부) 학교운영 전반 지원
			(과기정통부) 프로그램 단위 지원	(과기정통부) 프로그램 단위 지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⁴⁾이 심사되었으나 소위심사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계획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르면 「과학영재정책 선진화 방안 기획·설계」 용역('24.6월 ~ '25.7월)을 통해 UNIST·DGIST 부설 영재학교를 포함한 신규 영재학교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대구경북·울산·충남 3개 지역에 대한 설립 타당성 조사결과는 중간보고(24년 하반기 예정) 형태로 우선 도출할 계획이므로 설립 타당성 검토의 진행 상황과 중간보고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7

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269호,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참고1

전국 과학영재학교 현황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6.)

지역	학교명	위치	설립인가 (설립일자)	전환인가 (전환일자)	근거법률
서울	서울과학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88.09.14 ('89.03.03)	'08.04.30 ('09.03.01)	영재교육 진흥법
경기	경기과학고	경기도 수원시	'83.01.10 ('83.03.05)	'08.12.19 ('10.03.01)	영재교육 진흥법
부산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 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90.09.07 ('91.03.04)	'02.05.03 ('03.03.01)	한국과학기술원법 영재교육 진흥법
대구	대구과학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87.10.26 ('88.03.03)	'08.12.18 ('11.03.01)	영재교육 진흥법
대전	대전과학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83.11.21 ('84.03.07)	'12.07.24 ('14.03.01)	영재교육 진흥법
광주	광주과학고	광주광역시 북구	'83.11.21 ('84.03.26)	'12.07.24 ('14.03.03)	영재교육 진흥법
세종	세종과학예술영재 학 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2.11.27 ('15.03.01)	신설	영재교육 진흥법
인천	인천과학예술영재 학 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12.11.23 ('16.03.02)	신설	영재교육 진흥법
계	8개 교				

참고2

전국 과학고등학교 현황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6.)

지역	학교명	위치	설립년도	설립유형	근거법률
서울	한성과학고	서대문구	1992	공립	초중등교육법
	세종과학고	구로구	2008	공립	초중등교육법
부산	부산과학고	연제구	2003	공립	초중등교육법
	부산일과학고	사하구	2012	공립	초중등교육법
대구	대구일과학고	동구	2011	공립	초중등교육법
인천	인천과학고	중구	1994	공립	초중등교육법
	인천진산과학고	부평구	2013	공립	초중등교육법
대전	대전동신과학고	동구	2014	공립	초중등교육법
울산	울산과학고	울주군	2006	공립	초중등교육법
경기	경기북과학고	의정부	2005	공립	초중등교육법
강원	강원과학고	원주	1993	공립	초중등교육법
충북	충북과학고	청원	1989	공립	초중등교육법
충남	충남과학고	공주	1994	공립	초중등교육법
전북	전북과학고	익산	1991	공립	초중등교육법
전남	전남과학고	나주	1992	공립	초중등교육법
경북	경북과학고	포항	1993	공립	초중등교육법
	경산과학고	경산	2007	공립	초중등교육법
경남	경남과학고	진주	1984	공립	초중등교육법
	창원과학고	창원	2011	공립	초중등교육법
제주	제주과학고	제주	1999	공립	초중등교육법
계	20개 교				

참고3

한국과학영재학교 기본 현황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6.)

○ 설립목적

-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 조기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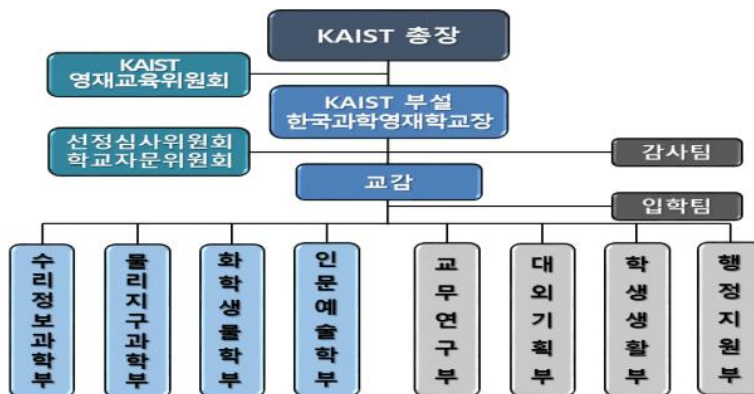
※ (설립근거) 한국과학기술원법, 영재교육진흥법 등

○ 주요연혁

- 1990.09. : 부산과학고등학교 설립
- 2003.03. : 과학영재학교 전환(국내 최초)
- 2005.07. : 교명 변경(부산과학고 → 한국과학영재학교)
- 2009.02.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전환

○ 조직 및 인원

- 조직 현황



- 학생 현황

(2024. 6월 기준 / 단위 : 명)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	108	109	100	317
학생수	여	27	31	31	89
	계	135	140	131	406

- 교직원 현황

(2024. 6월 기준 / 단위 : 명)

교원						직원				합계
교장	교감	전임 교원	교육청 교원	외국인/ 기간제	소계	행정/ 사무	기술/ 기능	조교	소계	
1	1	50	5	7	64	33	23	6	62	126

○ 교육과정 운영 및 특징

구	분	내	용							
선도적 과학영재교육과정 개발·운영		- 국내 고교 최초 혁신적 무학년 졸업학점제 도입·운영 - 기존의 국가자격에 의한 중등교원 임용제도와 차별화된 박사급 전문 교원 임용을 통한 혁신적 교원임용 제도 운영(한국과학기술원법 및 영재교육진흥법) ※ 제6차 교육과정 편제								
	구 분	이수 요건	세부사항							
	교과	127 학점	자연교과 67학점(56%) / 인문교과 52점(44%) 필수교과 66학점(55%) / 선택교과 53학점(45%) 융합 교과 8학점(최소 이수 요건)							
	창의연구 활동	28 학점	창의기초연구 6학점, R&E 16학점, 졸업연구 6학점							
	리더십활동	270 시간	자기계발활동, 협업활동, 세계시민활동 각 60시간 이상 (총 270시간 이상)							
학년별·단계별 교육연계 창의연구활동 프로그램 운영	<table><tr><td>창의설계활동 1학년 1학기</td><td>⇒</td><td>연구방법 기초세미나 1학년 2학기</td><td>⇒</td><td>R&E 2학년</td><td>⇒</td><td>졸업연구 3학년</td></tr></table> - 창의설계활동(1학년 1학기): 학생들의 연구 관심분야 탐색과 연구주제 구상 및 탐구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 설계활동 지도 - 연구방법기초세미나(1학년 2학기) :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선행 연구 및 조사와 탐구활동을 통해 R&E 연구제안서 완성 - R&E(2학년): 연구(Research)와 교육(Education)을 병행한 대표적 실험실 습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교수 등의 지도를 받으며 소그룹 자율연구 수행 - 졸업연구(3학년): 관심분야 심층 개별 연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졸업논문 완성(KAIST HRP : KAIST 교수 지도 / 개별연구 : 교내 교원 지도로 구분)			창의설계활동 1학년 1학기	⇒	연구방법 기초세미나 1학년 2학기	⇒	R&E 2학년	⇒	졸업연구 3학년
	창의설계활동 1학년 1학기	⇒	연구방법 기초세미나 1학년 2학기	⇒	R&E 2학년	⇒	졸업연구 3학년			
영재성 판별 및 우수과학영재 선발 제도 확립	- 국내 중등학교 최초 입학담당관 중심 과학영재전형 도입 - 우수 잠재력 보유 특이유형 영재 및 특정 분야 탐구능력과 몰입성 우수 영재 발굴을 위한 관찰·추천 기반 장영실전형 선발제도 구축 ※ 일반전형									
	구분	전형 방법								
	1단계	· 학생기록물평가(제출된 학생기록물에 의한 평가)								
	2단계	·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및 학생기록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단계	· 영재성 다면평가(글로벌 과학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성 평가)								
	※ 장영실전형									
	구분	전형 방법								
	1단계	· 제출된 학생기록물에 의한 평가 및 1차 면접								
	2단계	· 수과학 분야 탐구역량 구술 평가 및 열정, 자기주도성, 인성 면접 평가								